

2026년도 「상생형 AX 선도모델」 주관기관 (대기업 등) 모집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상생형 AX선도모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 (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도입기업(중소중견 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의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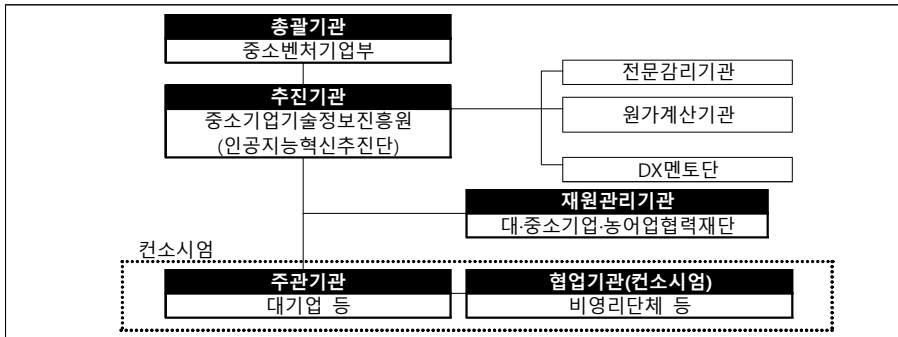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 지원규모 : 총 550억원

□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기관) 운영계획 수립,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와 운영, 구축지원, 사업 완료점검, 예산집행 등의 업무수행

- (재원관리기관)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발굴, 정부지원금·주관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기타 사업 관련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 AX선도모델 구축(공급기업 역할), 상생협력 지원, 사업운영, 전문인력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최대 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 본 사업은 데이터, AI, 설비,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는 고난도 AX 전환 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 참여 필요
 - ※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구축목표) 기업 전반의 AX 전환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도화 수준(중간1)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추진해야하며,
 - 반드시 2개 이상의 공정에 스마트화 적용 및 AI 도입 필수
 - * ① 데이터 수집체계, ② AI 모델 개발 및 적용, ③ 시스템 통합을 필수로 적용
 - ** ①, ②, ③ 등 기업의 제조혁신과 관련된 AGV-AMR 등 물류설비, 로봇도입 및 디지털 장비 전환, 설비교체 등의 HW 및 클라우드 등 포괄적으로 지원

총사업비 (최대)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	분담비율(%)			구축목표 수준
			정부(최대)	주관기관	도입기업	
30억원	12개월	최대 15억원	50	10	40	중간1 이상 목표설정 필수 (기 구축수준 무관)

* 본 사업은 기존 수행중인 사업과 동시 수행 가능

- (선도모델 구축지원) 주관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상생협력 지원)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

구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인력	기획/설계	AX전환 로드맵 수립	·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데이터 표준화 지도	·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기술/솔루션	AX솔루션 최적화 자문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구축/운영	전 과정 실질적 지도	·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 교육)	·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성과/판로	구매 계약 연계지원	·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공동단가 협상	·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인프라지원	AI·데이터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운영지원	유지보수 확대지원	·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 이 외에도 주관기관별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현물로 인정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4월 27일(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마감 시 별도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기업정보 등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단독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1~5번 서류 제출, 중소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구성시 6번 서류 제출, 이외의 경우는 7번 서류 제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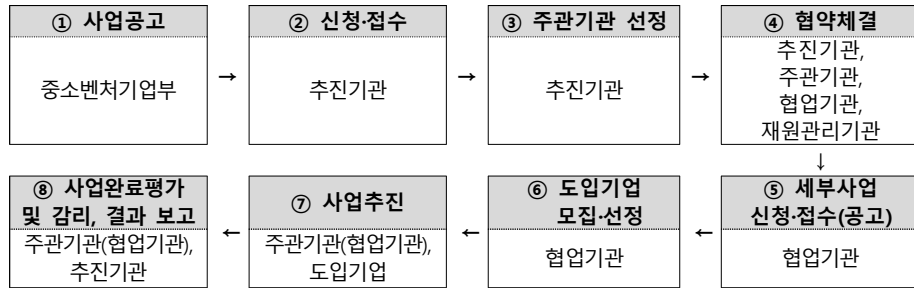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1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1부	
2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3	·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 인력 or 인프라 or 유지보수 지원 등에 대한 계획 필수 포함	
4	· 도입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 "수시접수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 문구 필수 포함 - 협업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프로세스 및 평가지표/기준을 공고문 내 반영	
5	· (신청자)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신청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6	<p style="text-align: center;">< 중소 공급기업이 주관기관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제출 ></p>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최근 3개년도('22~'24) 결산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시스템 등록
7	<p style="text-align: center;"><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참여 신청시 ></p> 1.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설립된 법인임을 확인, 임원구성도) 2. 해외 모회사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및 지분구조도(Ownership Chart)	

- (협업기관 지정) 기존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또는 지역 제조혁신 센터(테크노파크) 중 1개 기관을 필수로 선택 필요

* [7.문의처 참조]를 참조하여, 사전 참여 협의 필요

4.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 추진-협업-주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업진행과정 협의 예정

□ 주관기관 선정

- (선정방법)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주관기관의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
- 기존 대중소상생형 주관기관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 요건적합 시 적격성 평가 없이 상생형 AX 선도모델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신규 참여기업 : 적격성 평가 후 적합 시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별 종합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사업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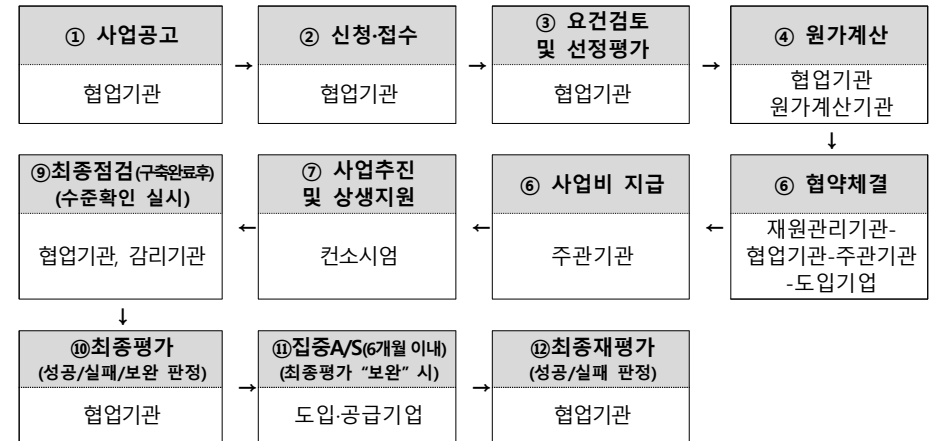
< 상생형AX선도모델 구축사업 참여 주관(협업) 기관 적격성 평가 항목 >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생 추진 전략 (60)	수행 전략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20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20
	상생협력 전략	- 수요기업 대상 상생지원체계의 적절성	20
수행 역량 (40)	조직체계	-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20
	사업관리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20
합 계			100

5. 세부 사업수행

※ 주관·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이며, 도입기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

□ 추진절차(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상생형 AX선도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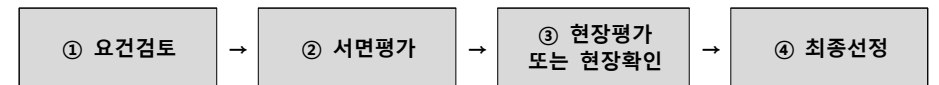


* 필요시 협업기관·주관기관간 협의하여 일부절차 변경 가능(추진기관과 협의 필요)

□ 평가추진

- 협업기관은 주관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절차를 구성하고, 최소 1회의 현장확인 또는 현장평가 절차를 필수로 수행해야 함

< 평가절차 구성(안) >



* 현장평가, 서면평가의 순서는 변경 할 수 있음

** 내실화된 과제 선정을 위해 선정단계를 추가 할 수 있음

- (평가) 아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협업기관별 평가 추진하며, 서면평가는 5인 이상, 현장평가는 2인 이상의 평가위원 구성(DX멘토단 또는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구성)

< 평가지표(안) >

평가 항목(안)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AX 선도모델을 통해 해결가능한가?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X목표가 연계되었는가?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준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 	
상생지원의 적절성(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기관의 상생지원 내용이 도입기업의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에 효과가 있으며, 적절한가? 	
합 계		100

* 위 지표를 활용하여 주관기관·협업기관별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평가 추진

□ 현물인정

- (주관기관 현물인정)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자부담 금액의 70% 이내 현물로 인정

< 현물인정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 인정금액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 및 자원의 투입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인력) 투입인력 × 투입기간 × 인건비로 산정 *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완료보고서 인력 투입일지, 지원 결과 보고서 제출 - (인프라) 사용량 또는 시장가격 기준 산정 * 신청시 원가계산을 위한 견적서 등 가격 산출가능한 증빙 제출 및 완료보고서 이용내역 증빙 제출 - (유지보수) 1년 기준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산정 * 완료보고서 유지보수 계약서 제출(의무 유지보수 1년에 추가적인 지원)

- (도입기업 현물인정)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도입기업 인건비, 연동 기구축장비에 대하여 기업부담금 중 50% 이내 현물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 시작 필수
- (도입기업 인건비)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급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 (연동 기구축장비) 기 솔루션 등과 연동예정인 기구축 설비·전산 장비, 제어장치, 스마트화기기 등 사업비 내 현물 인정

□ 운영비 지원

- 사업신청시 협업기관을 필수로 지정해야하며, 협업기관에 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협업기관은 19개 지역제조혁신센터, 대중소 상생형 협업기관으로 선정된 5개사 또는 비영리기관을 컨소시엄으로 구성(7.문의처 참조)
-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4% 이내에서 운영비 책정(운영비를 활용, 사업 선정평가 및 점검, 감리(15일) 등을 추진), 재원관리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를 운영비로 책정

□ 점검 및 완료보고

- 협업기관은 사업수행 전반을 관리하며, 필요시 중간점검 및 수시 점검,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최종 완료점검 추진
- 사업 수행과 동시에 추진기관 지정 감리기관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를 추진해야 함(15M/D, 협업기관 운영비 활용)
- 협업기관으로 정부지원금의 4%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 선정평가, 점검, 감리등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추진

6. 기타 사항

□ 교육 이수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확인]

※ 주관 및 협업기관의 자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교육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종료시 자체교육 운영결과 및 증빙 제출 필수

< (참고) 협업기관 역할 >

· 사업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등 사업별 선정절차 운영
·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지급, 협약 변경·해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및 관리
· 중간·완료 점검, 최종평가, 사업관리·감독, 수시점검, 문제과제 특별점검·평가 등
·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물 배포 등
· 기타 추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로그수집

- 스마트공장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사업 종료 이후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로그기록 점검

□ 기타사항

- 상생협력 출연금 인정여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필요

7. 문의처

□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관련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종합상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60, 0954, 0961

□ 협업기관 안내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비고
'26년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팀	02-6050-3857	대중소상생형 협업기관 또는 지역제조혁신센터 중 반드시 1개 기관을 지정하여 협약 후 협업기관으로 신청해야 함 (사전 유선문의 필요)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품질기술지원실	02-3271-2988 02-3271-2957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02-2124-4313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02-724-1190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02-6240-4873	
지역 제조혁신센터	서울	02-944-6032, 6036	
	부산	051-744-8294	
	대구	053-602-1756,1759,1751	
	경북	053-819-7030~7037	
	포항	054-223-2242	
	광주	062-602-7351,7353	
	전남	061-729-2582~6	
	제주	064-720-3039	
	경기	031-500-3100	
	경기북부*	031-539-5140	
	인천	032-260-0624	
	대전	042-930-4350, 4351, 4343	
	충남	041-336-9005, 9006	
	세종	044-850-3821, 3827	
	울산	052-219-8605	
강원	033-248-5682, 5697		
충북	043-270-2813~4		
전북	063-219-2272		
경남	1811-8297		

* 주관·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이며, 도입기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①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②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③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붙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 과정
- (교육비용) 무상(심화 과정은 유상)
- (신청방법) 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 통해 신청
※ 교육 세부내용 및 일정은 연수원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